

◇ 資料 1 ◇

1. 學校保健法(1967. 3. 30 法律 第1928條)

第4條(學校環境衛生 및 食品衛生) 學校의 長은 文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舍內의 空氣污染, 換氣, 採光, 助命, 溫濕度, 食器, 食品, 給料水, 上下水道, 便所, 汚物處理 기타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하여야 한다.

第5條(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) ①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서울特別市,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 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學校 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超過할 수 없다.

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서울特別市, 釜山市 및 道教育委員會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教育區廳長 또는 市·郡教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.

第6條(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等)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區域안에서는 第2號, 第4號, 第8號 및 第10號 내지 第14號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中 서울特別市, 釜山市 및 道education委員會 教

育監 또는 教育監이 指定하는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認定하는 行爲 및 施設은 除外한다. (以下 생략)

2. 學校保健法 施行令(^{1969. 11. 25 대} _(통령령제 4311호))

第3條(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) ① 法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, 直轄市 및 道教育委員會(以下 “教育委員會”라 한다)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(以下 “淨化區域으로” 설정하되, 絶對淨化區域은 學校出入間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地域으로 하고 相對淨化區域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地域中 絶對淨化區域을 除外한 地域으로 한다).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委員會가 淨化區域을 設定할 때에는 미리 서울特別市長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.

第5條(淨化의 要請) 教育區廳長은 또는 教育長은 法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禁止된 行爲 또는 施設에 대하여 市長(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의 市長에 한한다) 郡守·區廳長에게 法 第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措置 또는 처거조치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.

第6條(學校依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) (前略)

1. 18學級以上의 國民學級: 學校醫 1인, 學校藥師

- 1人 및 養護教師 1人을 둔다.
2. 18學級未滿의 國民學校 : 學校醫 또는 學校藥師 중 1人, 養護教師 1人을 둔다.
3. 9學級以上인 中·高等學校 : 學校醫 1人, 學校藥師 1人 및 養護教師 1人을 둔다.
4. 9學級未滿의 中·高等學校 : 學校醫 또는 學校藥師 중 1人과 養護教師 1人을 둔다.
5. 大學(大學校에 있어서는 단과대학) 초급대학, 教育大學 및 實業고등전문학교 : 學校醫 1人, 學校藥師 1人을 둔다.
6. 技術學校, 高等技術學校, 公民학교, 고등공민학교, 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學校에는 제1호~5호에 规定된 해당학교에 준하여 學校醫, 學校藥師 및 養護教師를 둔다.
7. 前項의 规定에 의한 學校醫, 學校藥師는 각각 그 免許가 있는者 중에서 學校長이 위촉한다.

◇ 資料 2 ◇

1. 學校環境衛生 基準值

(1974. 6. 21 文教部訓令 第226號)

- 가. 驟音 : 開窓時中央值 : 55phon 以下
閉窓時中央值 : 50phon 以下
上 限 值 : 65phon 以下
- 나. 照度 : 教 室 : 150Lux 以上

黑 板 : 300Lux 以上

複 道 : 70Lux 以上

※ 教室 및 黑板의 最大照度와 最小照度와의 比는 10:1以下이어야 하며 20:1 以上일때는 是正을 要한다.

다. 空 氣

- (1) 粉 墨 : 吸光度 0.1(1,550個/ml) 以下
上限值 : 3,000個/ml : (정동여지
진애계로 측정)
 - (2) 室內溫度 : 冬 季 10°C以上 夏 季 30°C以下
 - (3) 感覺溫度 : 冬 季 9.5°C以上 夏 季 26°C以下
 - (4) 濕度 : 氣溫 : 30~80%
- KATA冷却率 : 18~20%
- (5) 不快指數 : 70以上
 - (6) 落下細菌 : 平均細菌集落數 : 30個 以下
 - (7) 二酸化炭素 : 1,500ppm(0.15%) 以下
 - (8) 一酸化炭素 : 50ppm(0.005%) 以下

라. 飲料水

- (1) 殘留鹽素 : 0.2ppm 以上
- (2) 암모니아性窒素 : 檢出되어서는 안된다.
- (3) 有機物 : KMnO₄ 消費量이 10ppm 以下
- (4) 鹽素이온 : 200ppm 以下

마. “풀”場

- (1) 殘留鹽素 : 0.4ppm 以上
- (2) 染 明 度 : “풀”바닥의 白線이 明確히 보일
程度 以上
- (3) 有機物 : KMnO₄ 消費量이 12ppm 以下 ✗